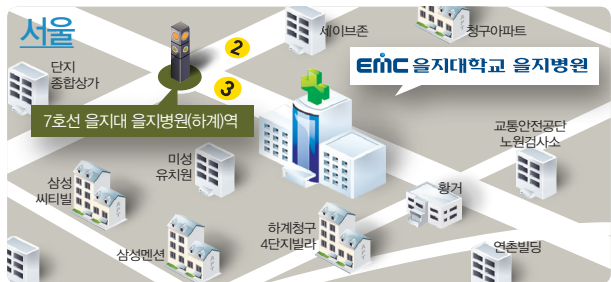




찾아오시는 길



을지대학교 을지병원 | 02) 970-8482

을지대학교병원 | 042) 259-1222

홈페이지 | www.emc.ac.kr

통합콜센터 1899-0001

예약상담시간 평일 08:30~17:30, 토요일 08:30~12:30

EMC 을지대학교의료원 을지재단

을지대학교(대전캠퍼스) | 을지대학교(성남캠퍼스) | 을지대학교병원 |
을지대학교 을지병원 |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| 범석학술장학재단 |
을지인력개발원 | 을지생명과학연구소 | 을지재단빌딩



진료기록 사본발급 Q & A

만 14세 미만 환자의 조부모가 사본발급 요청 시
환자 부모(친권자)의 동의가 필요한지요?

Q

A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서 규정하는 ‘친족’의 범
위는 ‘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’
이므로, 조부모의 경우 위 친족에 해당하여 친권자(부모)
의 동의 없이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
환자는 미성년자로 신분증이 없으므로 환자 신분증 사본
을 구비할 필요가 없으므로,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비서류

1. 열람요청인(조부모) 신분증
2. 친족관계 확인서류

환자가 군복무, 해외체류, 수감 중일 경우 대리인 및
친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방법은?

Q

A 환자가 군복무, 해외체류, 수감 등 동의서 및 위임장 원본
을 제출하기가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근거서류와 자필
서명한 동의서나 위임장을 팩스나 스캔한 파일을 출력한
형태로 제출이 가능 합니다.

* 단, 서류위조의 경우에는 위조한 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(사문서위조-형법 제231조 위반, 서명위조-형법 제238조 위반)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
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
사본발급은 어떻게 하나요?

Q

A 다음과 같이 서류를 구비하시면 사본발급 받으실 수 있
습니다.

구비서류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
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
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 본인인데 오늘 신분증을 안 가져 왔어요.
사본발급이 가능한가요?

Q

A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는 신분 확인이 되지 않기
때문에 환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사본발급이 불가능
합니다.

을지재단 Since 1956



Hospital Information
Team



의료정보팀 진료기록 사본발급

EMC 을지대학교의료원



진료기록 사본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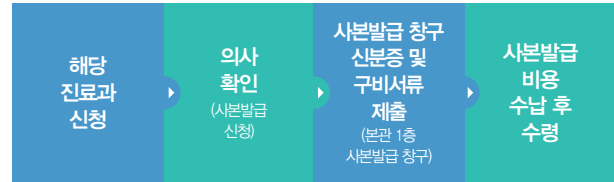


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구비서류



진료기록 사본발급 시 비용과 안내사항

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



진료기록 사본발급 관련 법규

- 의료법 제 21조
-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
-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
-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가-5

진료기록 사본발급에 필요한 서류

- 동의서에는 환자본인과 신청인의 인적사항, 열람 및 사본발급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, 위임장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의 인적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진료기록 사본발급 시, 신청인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내원하여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가 없는 경우 사본발급은 불가합니다.
- * 신분증은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.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-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동의서와 위임장은 을지병원 홈페이지(www.eulji.or.kr), 을지대학교병원 홈페이지(www.emc.ac.kr), 혹은 보건복지부(www.mw.go.kr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
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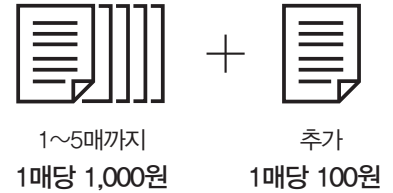
신청자	환자의 나이	구비서류
환자 본인	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	1. 환자 본인의 신분증
	환자 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	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(학생증, 여권 등)
	환자 만 14세 미만	1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2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친족 • 배우자 • 직계존속 • 직계비속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	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	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
	환자 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	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(학생증, 여권 등)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친족관계 증명서
	환자 만 14세 미만	법정 대리인만 가능
환자 대리인 • 형제 • 자매 • 보험회사등	환자 만 17세 이상 (주민등록증 발급자)	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	환자 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 (주민등록증 미발급자)	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(학생증, 여권 등)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	환자 만 14세 미만	1.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4.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5.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	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·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해외체류, 수감 중인 경우	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군복무 중인 경우	1.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.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5. 병적증명서(동사무소, 병무청 발급) 또는 복무확인서(부대발급)

- *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- *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
- * 친족관계 증명서는 환자 본인과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
- * 친족의 범위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 ·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(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)
- *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.

진료기록 사본발급 비용은?



- 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166호
- * 영상검사 및 특수검사의 이미지(사진) 등을 저장매체로 발급 시 비용은 별도 산정됩니다.

진료기록 사본발급

진료기록은 비밀문서입니다. 진료기록은 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가족력과 주된 증상, 진단결과 및 치료 등에 관한 모든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입니다.

진료기록의 내용은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으며 진료기록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사본은 엄격한 절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.

환자 외 모든 제3자는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환자의 동의없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.

